

양도소득세법 인지도 분석을 통한 양도소득세법 개선방안

-성실납세를 중심으로-

Improvements of the Transfer Income Tax Act through the Analysis of Recognition
for the Transfer Income Tax Act

-Focusing on Diligent Payment of Taxes-

윤윤석*, 심원미**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광운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Yun-Suk Yun(11982002@kw.ac.kr)*, Weon-Mi Sim(sim2212@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성실납세를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밝히고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연관시켜 해석하였다. 통계분석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 차등정도의 적정성,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현행 조세정책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양도소득세 납부회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행 조세정책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와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인식정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이해정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법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제고, 성실납세 회피방지를 위한 적법한 세무조사 강화 규정정립,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 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양도소득세 | 조세회피 | 세법구조의 복잡성 |

Abstract

This study has undertaken for the analysis of the level of recognition on the Transfer Income Tax. The statistical analysis through the questionnaire is made to find out the issues on the equitableness of Transfer Income Tax first with the level of equitableness of the Transfer Income Tax structure and appropriateness of the degree of different tax rate applied under the Transfer Income Tax, level of equitableness of the Transfer Income Tax structure and intent for avoidance of payment under the present tax policies, level of recognition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on those avoiding diligent payment of taxes, and it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s of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of the Transfer Income Tax and the level of complexity of the structure of the Transfer Income Tax in order to analyze if it has negative impact on the level of understanding for the structure of the Transfer Income Tax.

On the basis of the above analysis result, as the improvement plan on the Transfer Income Tax system, following has been presented; enhancement of equitableness of tax rate structure under the Transfer Income Tax for improving the equitableness of tax burden,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to strengthen the appropriate tax investigation for prevention of diligent tax payment avoidance, relaxation of complication of the structure under the Transfer Income Tax.

■ keyword : | Transfer Income Tax | Avoidance of Payment | Complexity of the Structure |

I. 서론

양도소득은 자본적 자산을 양도 또는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말하며 영업활동이외의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및 주식과 같은 자본적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이득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보유자산 가치의 증가분이라고 할 수 있다[9].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법에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한정시키는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이 그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라 국가의 재정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의 대부분은 조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의무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줄이고 국가의 조세수입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부과의 공평성과 관련한 조세제도의 개선은 필요한 것이다.

이에 조세회피를 유발하는 동기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세제도의 공평성, 세법의 복잡성, 세율 차등 정도의 적정성,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이들 요인들의 개선을 통해 조세회피인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를 위한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II. 양도소득세법 인지도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1항)¹⁾.

1)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조세의 본질적 기능 외에 투기로 인한 불노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통한 주택경기부양,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1. 양도소득세 부담의 형평성

국가의 재정수입은 조세수입을 통해서 반대급부 없이 국민 소득의 일부에서 조달되고 국가는 조달된 재원을 통해서 국민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16], 이때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는 각종의 정책적 측면과 경제적 효율성을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의 비과세와 감면²⁾ 등의 조세우대 조치를 하게 되고 이는 공평성을 해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7].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부동산양도관련 세법을 통해서 조세수입의 본래의 기능 보다는 부동산시장 관리기능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을 진정 시키는 기능과 침체된 시장을 부양시키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일이 많았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고율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준지가 인상,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요건강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동산 관련 산업의 침체기에는 세율의 인하, 기준지가 인하, 비과세 감면제도 요건의 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조절을 통해서 부동산시장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였다[13].

2. 조세의 납부 회피

납세자들은 양도소득세제도의 정책적 측면이 과도하게 강조될 때 불만이 쌓이고 납세행위를 도모하려는 개

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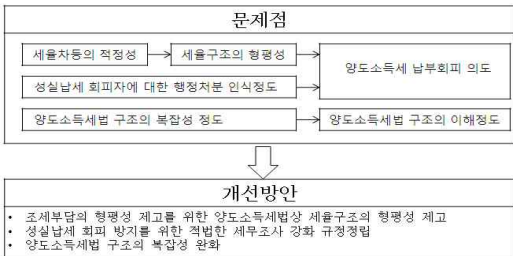
인적인 차원의 동기가 부여되어 납세자 스스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낳게 된다. 조세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 결여된다면 국민들이 정부의 분배정책에 대해 불신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감 때문에 발생하는 긴장감은 계속적으로 증가되며 그에 따라 각종 조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는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우선 조세회피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여 국가재정을 어렵게 하며,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심화시켜 국민의 단결력을 저하시키고 소득재분배 정책을 교란시킨다. 또한 지하경제의 생성원인이 되고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하시킨다. 그리고 조세회피는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람을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살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노동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전반에 불신풍조를 심화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게 된다. 김석범[1]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세회피성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부의 신뢰도, 세법지식, 조세회피의 만연도를 들고 있으며 조세회피의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III. 양도소득세법 인지도 분석을 통한 성실납세 저해요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은 설문조사방식을 이용하여 납세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표 1. 연구 흐름도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는 201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50부를 회수 하였으며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12부를 제외한 138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본의 특성은 [표 2]와 같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표 2. 표본의 특성

항목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94	68.1
	여자	44	31.9
소계		138	100.0
학력	고졸	30	21.7
	대졸	100	72.5
	대학원졸	8	5.8
	소계	138	100.0
연령대	30세 미만	28	20.3
	30 이상 40 미만	55	39.9
	40 이상 50 미만	40	29.0
	50 이상 60 미만	13	9.4
	60세 이상	2	1.4
	소계	138	100.0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는데 개괄적 흐름은 [표 1]연구 흐름도와 같다. 본 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17.0을 이용하였다.

1. 형평성측면에서의 양도소득세법 구조

조세의 공평성은 2가지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수직적 공평성은[18] 전통적으로 연구된 개념으로 누진세 또는 역진세의 조세제도 구조가 대부분 수직적 공평성에 근거하여 논의 되었다[17]. 수평적 공평성은 동일한 위치에 있는 납세자에게 동일한 부담을 하는 것이다.

한편 세율은 납세의무자에게는 세부담의 한계치를 결정하고 국가재정수입의 크기와 직결되는 요소이며,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양도소득세의 취지에도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조세의 본질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세율은 자산의 종류나 등기여부, 보유기간에 따라 초과누진세율 및 차등

적인 복수비교세율로 이루어져 복잡하고 높은 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도세 세율구조의 형평성에 부정적이면서 양도세 세율의 차등정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51명(전체의 36.9%), 양도세 세율구조의 형평성에 부정적이면서 양도세 세율의 차등정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6명(전체의 4.3%), 양도세 세율구조의 형평성에 긍정적이면서 양도세 세율의 차등정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3명(전체의 2.2%), 양도세 세율구조의 형평성에 긍정적이면서 양도세 세율의 차등정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4명(전체의 2.9%)로 양도소득세 세율구조의 형평성은 양도소득세 세율의 차등정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인한다고 인식하였다.

표 3.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양도소득세 세율 차등정도의 적정성

구 분	양도소득세법 세율 차등정도의 적정성						
	전혀 적정하지 않다	적정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적정하다	매우 적정하다	전체	
가	①	2 (1.4)	5 (3.6)	3 (2.2)	0 (0.0)	0 (0.0)	10 (7.2)
	②	4 (2.9)	40 (29.0)	18 (13.0)	6 (4.3)	0 (0.0)	68 (49.3)
	③	0 (0.0)	7 (5.1)	30 (21.7)	5 (3.6)	3 (2.2)	45 (32.6)
	④	0 (0.0)	3 (2.2)	8 (5.8)	4 (2.9)	0 (0.0)	15 (10.9)
	⑤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⑥	6 (4.3)	55 (39.9)	59 (42.8)	15 (10.9)	3 (2.2)	138 (100.0)
카이스퀘어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양측검정)			
45.164		12		0.000			

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정도, ①형평성이 전혀 높지 않다, ②형평성이 높지 않다, ③그저 그렇다, ④형평성이 높다, ⑤매우 형평성이 높다, ⑥전체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법상 세율³⁾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6%부터 70%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결국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은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이하 각 호 참조.

구조가 차별적이지 못한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종국적으로 조세회피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가 징세능력을 신뢰받을수록 조세회피의 경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Song과 Yarbrough의 연구결과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20] 징세기관의 효율성도 동시에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납세자는 현행 조세제도에 불만이 있으면 납세자 스스로 조세회피 등의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납세공평을 도모하려고 할 것이다.^[5] 조세부담이 합리적인 조세제도와 공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세될 때 조세저항은 적을 것이나, 합리적인 조세제도와 공평성에 위배될 때 조세저항과 조세회피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10].

표 4. 현행 조세정책 하에서의 납부회피의도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정도

구 분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						
	전혀 형평성이 높지 않다	형평성이 높지 않다	그저 그렇다	형평성이 높다	형평성이 매우 높다	전체	
가	①	0 (0.0)	2 (1.4)	3 (2.2)	0 (0.0)	0 (0.0)	5 (3.6)
	②	3 (2.2)	7 (5.1)	4 (2.9)	6 (4.3)	0 (0.0)	20 (14.5)
	③	0 (0.0)	14 (10.1)	11 (8.0)	2 (1.4)	0 (0.0)	27 (19.6)
	④	2 (1.4)	35 (25.4)	20 (14.5)	6 (4.3)	0 (0.0)	63 (45.7)
	⑤	5 (3.6)	10 (7.2)	7 (5.1)	1 (0.7)	0 (0.0)	23 (16.7)
	⑥	10 (7.2)	68 (49.3)	4 (2.9)	15 (10.9)	0 (0.0)	138 (100.0)
카이스퀘어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양측검정)			
24.999(a)		12		0.015			

가 현행 조세정책 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 ①전혀 납부를 회피하고 싶지 않다, ②납부를 회피하고 싶지 않다, ③그저 그렇다, ④납부를 회피하고 싶다, ⑤납부를 매우 회피하고 싶다, ⑥전체

본 조사결과 현행의 조세정책하에서 양도소득세 세율구조의 형평성이 없지만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고자하는 의도는 없다는 응답은 12명(전체의 8.7%), 양도소득세 세율구조의 형평성이 있어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고자하는 의도가 없다는 응답은 6명(전체의 4.3%), 현행의 조세정책하에서 양도소득세 세율구조

의 형평성이 없어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고자하는 의도는 있다는 응답은 52명(전체의 37.6%), 양도소득세 서울구조의 형평성이 있지만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고자하는 의도가 있다는 응답은 7명(전체의 5.0%)로 현행의 양도소득세 서울구조에 형평성이 없어서 납부를 회피하고자 한다는 인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제도의 형평성이 낮음으로 인해 조세회피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2. 조세회피 측면에서의 양도소득세법

납세자들이 조세를 납부하는 과정을 보면 납세자의 법적 환경과 조세회피기회, 기타 상황적 요인 및 조세 윤리를 납세자의 상황에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고려한 후 납세에 이르게 된다[20].

전태영[11]은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고 조세회피행위자에게 규제가 행해질 때 규제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을 연구하고, 조세회피규제방안의 하나인 벌칙의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정부 신뢰도가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itte와 Woodbury[14]는 세무조사나 행정처분의 증가는 조세회피를 보다 감소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본 조사결과 현행의 조세정책하에서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고자하는 의도는 없다는 응답은 15명(전체의 10.8%),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정도가 바람직하여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고자하는 의도가 없다는 응답이 4명(전체의 2.9%), 현행의 조세정책하에서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고자하는 의도가 있다는 응답은 69명(전체의 50.0%),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정도가 바람직하지만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고자하는 의도가 있다는 응답이 4명(전체의 2.8%)로 현행의 조세정책하에서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고자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때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가산세와 적발확률을 높이는 조세정책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표 5. 현행 조세정책 하에서의 납부회피의도와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인식 정도

구 분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인식정도					
	전혀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합당하다	매우합당하다	전체
④	① (0.7)	3 (2.2)	1 (0.7)	0 (0.0)	0 (0.0)	5 (3.6)
	② (1.4)	9 (6.5)	5 (3.6)	4 (2.8)	0 (0.0)	20 (14.5)
	③ (2.2)	16 (11.6)	8 (5.8)	0 (0.0)	0 (0.0)	27 (19.6)
	④ (11.6)	33 (23.9)	12 (8.7)	2 (1.4)	0 (0.0)	63 (45.7)
	⑤ (8.7)	12 (8.7)	8 (5.8)	1 (0.7)	2 (1.4)	23 (16.7)
	⑥ (24.6)	34 (24.6)	69 (50.0)	27 (19.6)	8 (5.8)	138 (100.0)
카이스퀘어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양측검정)		
27.007(a)		12		0.008		

④현행 조세정책 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 ①전혀 납부를 회피하고 싶지 않다, ②납부를 회피하고 싶지 않다, ③그저 그렇다, ④납부를 회피하고 싶다, ⑤납부를 매우 회피하고 싶다, ⑥전체

유시영[8]의 연구에서도 적발확률을 높이고 가산세율을 높이면 조세회피행위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조사결과 성실납세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정도가 미흡하다는 비율이 74.6%이고 적정하다는 응답이 5.8%인 점은 조세회피를 감소시키기에는 행정처분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3. 복잡성 측면에서의 양도소득세법

우리나라는 1961년 대폭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면서 종래의 세무당국에서 납부세금을 부과하는 부과세주의 일반도에서 납세자 스스로가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주의로 전환을 시도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신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세법은 일반 납세자가 세법규정에 대한 내용

을 정확히 이해하여 스스로 소득신고를 하기는 매우 곤란할 정도로 세법규정이 복잡한 체계로 되어있다. 이렇게 세법규정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조세체계를 마련하고 조세의 공평성, 중립성, 실질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법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복잡·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4].

Vogel[15]은 성실납세와 세법의 복잡성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도세의 복잡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양도세 구성의 이해도가 낮다는 응답은 9명(전체의 6.6%), 양도세의 복잡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양도세 구성의 이해도가 높다는 응답은 2명(전체의 1.4%), 양도세의 복잡성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양도세 구성의 이해도가 낮다는 응답은 69명(전체의 50.0%), 양도세의 복잡성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양도세 구성의 이해도가 높다는 응답은 11명(전체의 7.9%)로 양도소득세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성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정도 인식과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이해정도

구 분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이해정도						
	매우 이해하기 쉽다	이해하기 쉽다	그저 그렇다	이해하기 쉽다	매우 이해하기 쉽다	전체	
㉔	①	0 (0.0)	3 (2.2)	3 (2.2)	0 (0.0)	0 (0.0)	6 (4.3)
	②	3 (2.2)	3 (2.2)	3 (2.2)	2 (1.4)	0 (0.0)	11 (8.0)
	③	1 (0.7)	1 (0.7)	11 (8.0)	1 (0.7)	1 (0.7)	15 (10.9)
	④	3 (2.2)	42 (30.4)	18 (13.0)	10 (7.2)	0 (0.0)	73 (52.9)
	⑤	11 (8.0)	13 (9.4)	8 (5.8)	1 (0.7)	0 (0.0)	33 (23.9)
	⑥	18 (13.0)	62 (44.9)	43 (31.2)	14 (10.1)	1 (0.7)	138 (100.0)
카이스퀘어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양측검정)			
49.372(a)		16		0.000			

㉔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정도 인식, ①전혀 구조가 복잡하지 않다, ②구조가 복잡하지 않다, ③그저 그렇다, ④구조가 복잡하다, ⑤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⑥전체

IV. 성실납세를 위한 양도소득세법 개선 방안

1.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제고

현행의 소득세법상 세율구조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에 규정된 일반세율 6%에서 35%까지 4단계 세율구조와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보유기간, 1세대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양도 등 각각에 대하여 40%에서 70%까지의 각 세율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납세자들의 관점에서는 형평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바, 세율적용단계와 세율의 차등정도는 정찬웅[12]의 연구 결과에서도 보듯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를 위험회피형으로 볼 때 세율구조를 초과누진세율구조로 하고 벌금율과 세무조사의 확률을 높임과 동시에 초과누진세율 적용분기점 이하의 세율과 초과의 세율차이를 크게 하고 세율적용단계를 현실에 맞게 그 단계를 단순화하면 납세자의 신고소득이 높아질 것이다.

한편 감면제도 측면에서도 양재욱[6]의 연구에서처럼 현행의 감면제도는 양도대상자산의 범위를 좁게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비과세나 감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방만하고 광범위하여 양도소득세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과세의 형평을 침해함으로써 그 문제의 심각함이 크며, 이들 비과세 감면 조항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과 수직적 수평적 불공평의 심화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적인 소거 내지는 요건을 강화하여 과세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거래세제에 있어서 세율의 추가적인 인상 또는 인하를 고려할 때 이 세율의 변동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다양한 충격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율변동의 폭을 결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및 지방재정 조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상기의 선행 연구결과와 본 연구를 통한 조사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양도소득세법상 세율 구조는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성실납세 회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세무조사 강화 규정정립

현행의 행정조사가기본법은 제1장 총칙부터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제3장 조사방법, 제4장 조사실시, 제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제6장 보칙까지 총 27개조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조사가기본법 시행령은 제1조 목적부터 제14조 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까지 총 14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조사가기본법은 개념적 틀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 시행 사항인 행정조사가기본법 시행령도 제3조 수사조사, 제6조 출석요구 등, 제9조 공동조사 실시 분야 등에서 실무적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성실납세 방지를 위한 강화된 규정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Witte와 Woodbury[14]에 의하면 과세당국이 활동수준의 강도를 높일 때 조세순응을 유도하며, Christiansen[19]은 조세회피 적발확률은 낮지만 발각되면 벌금이 무거운 경우가 벌금이 낮지만 적발확률이 높은 경우보다 더 효과적인 조세회피 억제 수단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유시형[8]은 소득수준과 조세회피행위에는 상관관계를 없앴고 세율과 조세회피행위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적발확률을 높이면 조세회피행위가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기원[3]의 연구 역시 세무조사 및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조세회피를 억제시킴과 동시에 성실납세의식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변수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결국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조사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적절한 세무조사는 필요한 것이며 이를 위한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규정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행정조사가기본법과 행정조사가기본법 시행령에 이와 관련한 좀 더 강화된 규정이 추가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세정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 완화

우리나라의 현행 양도소득세법 구조는 소득세법 제55조부터 제154조까지 여러 조문에 걸쳐 산재되어 있어서 납세자들에게는 매우 복잡하여 이해가능성이 상당히 낮게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석무[5]의 연구에서는 세제의 공평성과 세법의 복잡성에 대한 세제인지도는 조세회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잡한 항목으로는 모호성, 계산과정, 변경, 상세성 및 신고양식 등 다섯 가지 복잡성요인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2]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제도’가 가장 복잡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조사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조세회피를 감소시키고 조세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세법 규정을 정비하여 복잡성 정도를 줄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특히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공제와 감면규정,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 그리고 산출세액 계산과 예정신고 및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계산까지 복잡한 단계를 거쳐 산출해내는 양도소득세법 규정이 구조자체의 정비를 통해 납세자들의 이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복잡성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저해요인과 개선방안 요약

성실납세 저해요인	개선방안
세율구조 비적정성에 따른 형평성미흡	세율차등정도, 감면 등 구조정비
행정처분 미흡에 의한 납부회피	적절한 세무조사 강화
세법구조 복잡성에 의한 낮은 이해도	세법규정 구조 정비

V. 결론

본 연구는 성실납세를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법의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많은 선행 연구자들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조세회피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살펴본 후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조

사를 통해 밝히고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연관시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분석은 먼저 양도소득세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 차등 정도의 적정성,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현행 조세정책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납부회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행 조세정책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와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인식정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 정도가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이해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이해정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법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제고, 성실납세 회피방지를 위한 적법한 세무조사 강화 규정정립,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 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론적이고 문헌적으로만 규명하기 보다는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한 납세자들의 인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으며, 다만 설문조사 대상을 부산경남지역에 한정함으로써 조사·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재산보유 특성에 따른 분석 및 납세자 이외의 전문가들의 인식정도도 함께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한다면 보다 의미 깊은 연구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아쉬움으로 남기며 이는 향후의 추가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김석범,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92-95, 2003.
 [2] 김진태, *양도소득세법의 복잡성 정도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2).
 [3] 남기원, *납세자의 세제 인지도가 성실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92-94, 2001.
 [4] 신현대, “납세자의 특성이 세무대리인의 공격적 업무수행 행태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47호, 대한경영학회, pp.2825-2849, 2004(12).
 [5] 심석무, “납세자의 세제인지도와 조세회피의 상관 관계”, *경영연구* 제17집, 한남대학교 경영연구소, pp.106-107, 2002(2).
 [6] 양재욱, *부동산조세정책의 현황과 평가*,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1, 2009(2).
 [7] 오재선,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연구* 제13집, 국립세무대학 조세문제연구소, pp.191-192, 2000.
 [8] 유시형, *조세회피 의사결정 요소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28-108, 1992.
 [9] 이지홍, “양도소득세 계산요소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8호, 한국세무학회, pp.303-304, 1996.
 [10] 이필우, “조세부담과 과세의 한계 : 그 사회 심리적 이해를 위하여”, *한국조세연구원* 제1호, 한국조세학회, p.45, 1985.
 [11] 전태영,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20-50, 1990.
 [12] 정찬웅, “납세자의 소득신고 수준결정에 관한 실험적 연구”, *회계학연구*, 제 21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pp.73-128, 1996.
 [13]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정책50년* 제1권, pp.561-563, 1997.
 [14] A. Witte and D. Woodbury, “The Effect of Tax Laws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working paper 83-1,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North Carolina, pp.41-87, 1983.
 [15] J. Vogel,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 Data," National Tax Journal, Vol.27. No.4, pp.499-513, December 1974.
- [16] R. J. Eger. III and D. V. Denison. "Tax Evasion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Case of the Motor Fuel Tax,"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60. No.2, p.163, March/April 2000.
- [17] R. Plonick. "A Measure of Horizontal Inequ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pp.283-288, 1998.
- [18] S. A. Madeo, "Some Evidence on the Equity Effects of the Minimum Tax on Individual Taxpayer," National Tax Journal, pp.457-465, 1981.
- [19] V. Christiansen, "Two Comments on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15, pp.389-393, 1980.
- [20] Y. Song and T. E. Yarbrough,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A Surve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p.449, Sep./Oct. 1978.

심 원 미(Weon-Mi Sim)

정회원



- 2007년 3월 ~ 현재 : BR Planning(주) 대표
- 2010년 8월 : 광운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박사 수료)

<관심분야> : 부동산 조세, 부동산투자분석

저 자 소 개

윤 윤 석(Yun-Suk Yoon)

정회원



- 1982년 3월 ~ 현재 :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1985년 8월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경영학박사)

<관심분야> : 부동산 조세, 부동산 경영관리